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207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2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5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5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12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18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46
5) 「폐기물관리법」	59
6) 「자연공원법」	63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70
8) 「습지보전법」	73
9) 「토양환경보전법」	78
10) 「물관리기본법」	81

I. 제안경위

2024년 7월 22일 정부가 제출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은 2024년 7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사항의 심의 기능이 유사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량 인증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습지보전법」에 따른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폐기물 처리에 관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던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제출 배경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이하 ‘정부위원회’라 함)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으로서,

행정기능 및 행정수요의 증대에 대응하여 전문적 지식을 도입하며, 이해관계의 통합·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고 있음.

그러나, 정부위원회가 장기간 미구성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각 부처 간 정부위원회 기능의 유사·중복이 발생하는 등 정부위원회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기준 정부위원회 636개를 대상으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전수 조사하여 최소 30% 이상 정비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행정안전부는 2022년 9월 동 계획에 따라 각 부처별로 ① 장기간 미구성, ② 운영실적 저조, ③ 위원회간 기능 유사·중복, ④ 단순 자문 기능 수행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부위원회를 폐지 또는 통합하는

자체 정비안을 마련하였음.

위 정비안에 따라 개정안은 5개 정부위원회를 폐지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10개 정부위원회를 4개로 통·폐합하는 등 기존 15개 위원회를 4개로 정비하고, 1개 정부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려는 내용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의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① 국가습지심의위원회, (담)사전검토협의회,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빙공해방지위원회 등 5개 정부위원회는 폐지하고,

②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배출권운영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화학물질안전위원회), 친수구역조성위원회(⇒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지질공원위원회(⇒국가자연공원위원회)는 그 기능을 타 정부위원회로 이관하며,

③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정부위원회를 폐지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의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검토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

연 번	법률명	개정안 주요내용	분류
1	습지보전법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폐지	폐지
2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사전검토협의회 폐지	폐지
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폐지 및 필요한 경우 중앙환경정책위원회 활용	폐지
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빛공해방지위원회 폐지 및 기능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이관	폐지
5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정화자문위원회 폐지	폐지
6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배출권운영위원회로 명칭 변경	통·폐합
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로 이관	통·폐합
8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	통·폐합
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폐지 및 그 기능을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	통·폐합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폐지 및 그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	통·폐합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친수구역 지정·변경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수행	통·폐합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이관	통·폐합
13	자연공원법	국립공원위원회 명칭을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변경 및 기존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이관	통·폐합
14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을 대통령→국무총리로 변경	소속변경

2. 개별 법률별 검토의견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공개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는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7조제5항·제8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① 현행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한 ‘배출권운영위원회’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온실가스정보 공개 여부 심의 기능을 이관하고, ② 현재 시행령에 근거하여 배출권 할당·할당취소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배출권운영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① ~ ④ (생략)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u>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u>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u>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u>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 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 ----- ----- ----- ----- ----- <u>따른</u> ----- ----- -----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26조(배출량 인증위원회) ①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 제29조에 따른 상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량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6조(배출권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에 배출권운영위원회(이하 “배출권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1. 제12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u> <u>2. 제16조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u> <u>3. 제17조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u> <u>4. 제25조에 따른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의 인증</u> <u>5. 제29조에 따른 상쇄</u> <u>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u> <u>②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배출권운영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u>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u>인증위원회의</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생략)	③ <u>분과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한다.</u> ④ <u>분과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서 심의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배출권운영위원회의 심의로 본다.</u> ⑤ <u>배출권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40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1. <u>배출권운영위원회</u>----- ----- 2. (현행과 같음)
--	---

첫째,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1)에 따른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인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이하 “관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기간 내에 달성하여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위원회’는 2021년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이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단 4회에 불과한데, 이는 관리업체로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여부 등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리업체의 주요정보 비공개 심사 기능을 ‘배출권 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통·폐합하려는 것으로,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기능이 목표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정보 비공개 심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업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가 개최됨을 고려할 때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적합성 평가 및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배출권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업무를 함께 심의하도록 통합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를 관리업체와 협의하여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명세서를 바탕으로 등록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관리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관리업체의 지정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 제3항에 따른 목표의 준수 및 명세서의 제출·수정·보완, 제4항에 따른 등록부의 관리, 정보 공개의 범위·방법, 비공개 요청의 방법,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비공개 여부의 결정, 제6항에 따른 개선 명령 및 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²⁾에 근거를 두고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및 할당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최근 3년간 11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그런데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의 총량, 감축하여야 하는 온실가스의 규모 및 비용이 달라짐으로써 할당대상업체의 감축의무 및 재산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배출권 할당·할당 취소 등에 대한 조정·심의 기능을 법률에 근거를 둔 ‘배출권운영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할당결정심의위원회) ①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이하 “할당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의 할당
2. 제26조제1항에 따른 할당계획 변경으로 인한 배출권의 추가 할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배출권의 추가 할당
4.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권 할당의 취소

②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할당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법적 근거 및 업무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배출량인증위원회,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및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배출량인증위원회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근거조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제5항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소속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환경부
위원장	환경부차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환경부차관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16명 이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 부문별 관장기관 및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 탄소중립·녹색성장 및 정보공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 포함 16명 이내 -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고위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기후변화·탄소시장·온실가스감축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 능	- 배출량 적합성 평가 결과 심의 -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심의 - 상쇄배출량 관련 방법론·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심의	- 목표관리업체의 명세서 주요정보 비공개 심사	-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 할당, 할당 취소 등 심의 - 할당계획 변경에 따른 배출권 추가할당, 신청에 의한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량 조정·심의

2)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위원회를 폐지하고 빛공해방지계획의 심의 기능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u>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빛공해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제4조(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u>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빛공해방지를 위한 계획(이하 “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u>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빛공해방지계획</u>	제5조(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 ----- ----- -----

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관할 지
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
(이하 “시·도빛공해방지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6조(빛공해방지위원회) ① 빛공
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환경부 소속으로 빛공해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지명
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
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빛공
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
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
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빛공해방지계획에 따라 「환경
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
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이하
“시·도환경정책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제>

을 심의한다.

1. 빗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
행에 관한 사항

2. 빗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
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
비에 관한 사항

3. 빗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
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 빗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빗공해 방지대책 추
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제7조(빗공해방지지역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시·도빗공해방
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등에 관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
공해방지지역위원회(이하 “지역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

<삭 제>

제8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② (생략)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해제)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조명환경관리
구역의 지정을 해제 또는 변경
하려는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
를 받아야 한다.

③ -----

-----시 · 도

환경정책위원회-----.

② -----

----- 시 · 도 환경 정책 위원회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빛공해방지위원회’ 및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는 2012년 법률에 근거가 마련되어 운영 중으로, 빛공해방지위원회는 최근 3년간 총 2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빛공해방지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빛공해방지위원회
근거조항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6조
소속	환경부
위원장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 능	-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빛공해 방지 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개정안은 ‘빛공해방지위원회’ 및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폐지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시·도지사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시·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또한 「환경정책기본법」³⁾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오염의 정의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 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화학물질관리법」

각 개정안은 현행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②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③ 각 정부위원회를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기존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재편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임(「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 삭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6조 삭제 및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7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	7. ----- ----- -----

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8. -----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9. -----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한 것을 말한다.

10. (생 략)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 라. (생 략)

11. ~ 19. (생 략)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 략)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

10. (현행과 같음)

10의2. -----

-----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
질안전위원회-----
-----.

가. ~ 라. (현행과 같음)

11. ~ 19. (현행과 같음)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물
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
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물질
안전위원회”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

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3. (생략)

③·④ (생략)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화학
물질안전위원회-----

2.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
 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
 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⑥ ~ ⑧ (생략)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1. (생략)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illegible]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illegible]

1. (현행과 같음)

2.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3. (현행과 같음)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

-----화학물질 안전위원회-----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1. · 2.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
1. <u>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u><삭 제></u>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 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	<u><삭 제></u>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

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

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

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

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

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

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
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
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
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
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
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사람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
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
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

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고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④ ~ ⑥ (생략)

제9조(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
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생 략)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
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
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
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
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
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
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
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
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 ⑥ (생 략)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

-.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화학
물질안전위원회-----
-----.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현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행과 같음)

② -----
-----화학물질
안전위원회-----
-----.

-----.

③ ----- 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생 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

-----.

1. ~ 5. (현행과 같음)

②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화학
물질안전위원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
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
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
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
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⑦ (생략)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
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

-----.

⑤·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현
행과 같음)

② -----
-----화학물질
안전위원회-----
-----.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

[illegible]

1. ~ 6. (현행과 같음)

②

화학물 안전위원회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_____

 _____화학물질
안전위원회_____

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u>관리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2. (생략) ③ (생략) ④·⑤ (생략)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u>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 2. ~ 5. (생략)	-----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화학물질 안전위원회</u>-----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 -----. <삭제> 2. ~ 5. (현행과 같음)
--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u> 」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 ----- ----- -----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 <u>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u> 」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	4. ----- ----- ----- -----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 13. (생략)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 ⑤ (생략)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

-----.

5. -----

-----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

6. ~ 13. (현행과 같음)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화학물질안전위원회) ① -----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이하 “화학물질안전위원회”라 한다)-----
-----.

②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50명 -----
-----.

③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

-----.

④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

---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위원회-----

-----.

⑥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⑤ ~ ⑦ (생략)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화학물질안전위원회

⑦ -----화학물질안전위원회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화학물질안전위원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화학물질안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u>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 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 직원</u>
--	--

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4)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13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5)에 따른 ‘화학

-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8. 3. 20.>

물질평가위원회’는 중점관리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1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6)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는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최근 3년간 총 6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근거조항	화학제품안전법 제6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
소속	환경부	환경부	환경부
위원장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환경부 차관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위원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 내과, 예방의학 등 살생물제 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 -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기 능	-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지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 살생물물질의 승인, 물질동등성의 인정 및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품유사성의 인정 및 승인·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	---

개정안은 각 정부위원회별 중복되는 기능을 통합하고 운영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관리위원회’, ‘화학물질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이를 기존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인원을 확대(30명 ⇒ 50명)하여 재편한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각 정부위원회 모두 화학물질과 관련된 기본계획의 수립, 살생물제품·중점관리물질·유해화학물질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으로 위촉되기 위한 요건 또한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화학물질 관련 업계 종사자’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그 실질이 동일함을 고려할 때 이를 ‘화학물질안전위원회’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4)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기능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등 현행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려는 것임(「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 제13조, 제16조, 제37조 및 제38조).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생략)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 ----- <u>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수자원 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⑤ ~ ⑦ (생략)	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 간단체 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원회의 위원 중 해 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 천하는 사람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 화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 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 리위원회 ⑤ ~ ⑦ (현행과 같음)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생략)	제4조(친수구역의 지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4항에 따라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⑦ (생략)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⑧ (생략)

<신설>

⑤ -----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 -----
-----.

⑥·⑦ (현행과 같음)

제13조(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제2항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
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
쳐 확정된 후 이를 시·도지사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국
가교통위원회(「대도시권 광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
1항에 따른 교통계획을 심의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
19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
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
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국가수자원관리위
원회 -----

-----.

③ (생 략)

제5장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부장관이 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③ 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속의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친수구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⑤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친수구역의 지정,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관리 및 기금의 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전담조직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	--------------------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친수구역⁷⁾ 지정 또는 변경, 친수구역 실시계

7)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가하천의 정비·복원 등으로 친수여건이 조성되는 주변지역 중 지속 가능한 친수공간으로 조성·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현재 부산 EDC(에코델타시티), 나주 노안, 부여 규암, 대전 갑천의 4개 친수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획 승인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법 제16조제2항8) 등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⁹⁾¹⁰⁾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임.

또한,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¹¹⁾에 따라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설치하는 위원회임.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
-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6조(「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 ① 친수구역조성사업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제37조에 따른 친수구역조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① 친수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친수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 제30조에 따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0) 친수구역조성위원회는 2011년 법 제정 이래 친수구역 지정과 친수구역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을 위하여 매년 1~2회 개최 중에 있음.
-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친수구역 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는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기능을 친수구역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수자원의 계획 수립·변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포괄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환경부는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¹²⁾에 따른 분과위원회¹³⁾로서 ‘친수구역분과위원회’를 신설하여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임.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⑥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에 관한 분과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조정 또는 심의로 본다.

13) <분과위원회 운영 계획>

총괄분과위원회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되거나 국가수자원 관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	제1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하류 유역
제2분과위원회	한강 유역 중 섬강 합류 후 지점 상류 유역	제3분과위원회	금강 유역
제4분과위원회	영산강, 섬진강 유역, 제주권 유역	제5분과위원회	낙동강 유역
친수구역분과위원회 (신설 예정)	친수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 수립·변경 등		

[친수구역조성위원회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통합(안)]

구 분	친수구역조성위원회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통합)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정안)
소속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환경부장관
위원장	환경부장관	환경부차관	환경부차관
부위원장	-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위원 수	25명 이내	50명 이내	50명 이내
위원 구성	○ 당연직 위원 - 위원장 -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기재부차관, 행안부차관, 문체부차관, 환경부차관 (시행령 제27조제2항) ○ 위촉직 위원 - 하천관리·도시계획 또는 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	○ 당연직 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위촉직 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필요) -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등) -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수자원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 위 해당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 필요) ○ 당연직 위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 기재부, 행안부, 문화부, 농림부,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위촉직 위원 - 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수리학, 경제학 또는 법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 수자원개발, 하천, 도시, 환경, 사법·입법 또는 경제 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 및 실무 경험에 있는 사람 - 위 해당자 중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¹⁴⁾¹⁵⁾은 친수구역 실시계획에 대한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관련 위원회(국가교통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¹⁶⁾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해당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현행 각 1명)을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당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¹⁷⁾.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친수구역조성위원회) ④ 제13조제2항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15) 개정안에서는 제13조제9항으로 이관

16) <관련 위원회 현황>

구 분	근거법률	심의대상	대상사업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면적 100만㎡, 또는 수용인구 2만 이상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 평가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도시개발사업 시행 시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보전산지 50만㎡ 이상

17) 아울러 해당 관련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친수구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개정안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위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함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위촉직 위원에 한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방안¹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¹⁸⁾.

18) 현행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촉위원에 한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④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 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 결정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앙환경정책위원회’로 이관하려는 것임(「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제2항 및 제48조의3).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생략)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u> 에 자문할 수 있다.	② ----- ----- ----- -----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u>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u>	<u><삭 제></u>
① <u>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u>	

<u>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법 제48조제1항¹⁹⁾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조치명령대상자²⁰⁾에게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²¹⁾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9)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치명령대상자”라 한다)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8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20)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 등

21)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① 제48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는 2020년 5월 근거 법률 시행 이래 현재까지 총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조치명령 가능 여부 및 조치명령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음.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근거조항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3
소속	환경부
위원장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내외(현재 9명) - 폐기물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교수 2명, 정부 1명, 유관기관 2명, 민간 협회 2명, 변호사 2명)
기 능	-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 또는 조치명령 범위 결정에 대한 자문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문 실적이 높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²²⁾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 이관하려는

- 22)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환경정책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 1의2.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가축분뇨의 처리·자원화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녹색제품구매촉진기본계획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6.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관리기본계획 등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환경시험·검사발전기본계획 등 환경시험·검사 및 환경기술 분야의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

것으로,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기능에 불과하고, 필요한 경우 현재 환경정책 전반에 관하여 심의 또는 자문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는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향후 이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설정, 재질·구조의 개선, 재활용비율 등에 관한 사항

8의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에 관한 사항

8의3.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정책·자연환경·기후대기·물·상하수도·자연순환·지구환경 등 부문별 환경보전 기본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6)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국립공원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변경하고, 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현행 동법 시행령에 따른 지질공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포함하려는 것임(「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조 등).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국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역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 3. (생략) 4. 제9조에 따른 <u>국립공원위원회</u> 의 심의 ②·③ (생략)	제4조의2(국립공원의 지정 절차) ① ----- -----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자연공원위원회</u> ----- ②·③ (현행과 같음)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
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
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
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
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
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
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공원위원회
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국립공원위원회의 경
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도립
공원위원회 또는 광역시립공원
위원회(이하 “도립공원위원회”
라 한다) 및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또는 구립공원
위원회(이하 “군립공원위원회”
라 한다)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
우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
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국가
자연공원위원회-----

② -----

----- 국가자연공원위원회-----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1. (생략)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u>국립공원위원회</u>만 해당한다) 3. (생략) <u><신설></u> 4. 5. (생략) 제10조의2(전문위원) <u>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조사·연구 및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국립공원위원회</u>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u>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u>국립공원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③ (생략)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	1. (현행과 같음) 2. ----- ---<u>국가자연공원위원회</u>--- ----- 3. (현행과 같음) 3의2. <u>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국가자연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u> 4. 5.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전문위원) <u>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u> ----- ----- ----- <u>국가자연공원위원회</u>에 ----- -----.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u>국가자연공원위원회</u>----- -----. ②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국립공원계획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야 한다.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국립공원위원회</u> 의 심의	3. <u>국가자연공원위원회</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지질 공원에 적용되는 이 법의 규정 은 제1조, 제2조제1호 · 제4호의 4, <u>제3조</u> , 제36조의2부터 제36조 의8까지, 제80조 및 제86조로 한다. 다만, 지질공원과 다른 자 연공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적용한 다.	제36조의2(적용범위 등) ① ----- ----- ----- -- <u>제3조, 제9조, 제10조제3호</u> <u>의2 · 제5호, 제10조의2</u> -----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시 ·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 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과의 <u>협의를</u> 거 쳐 인증할 수 있다.	② ----- ----- ----- ----- ----- <u>협의와 국</u> <u>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u>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제36조의4(지질공원의 인증 취소)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u>협의를</u>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2.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협의를</u> <u>국가자연공원위원회의 심의</u>----- -----. -----. 1. 2. (현행과 같음)
--	--

자연공원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며, 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도록 하고 있음²³⁾).

한편, 현행법은 국립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 시행령에서는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23)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①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관리한다.

제36조의3(지질공원의 인증 등) ②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다.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²⁴⁾하고 있음.

[국립공원위원회 및 지질공원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국립공원위원회	지질공원위원회
근거조항	「자연공원법」 제9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
소속	환경부	환경부
위원장	환경부 차관	환경부 차관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 - 기획재정부 · 국방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축산식품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국립공원공단 상임이사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부장 - 국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환경 · 생태 · 경관 · 산림 · 해양 · 문화 · 휴양 · 안전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기획재정부 · 교육부 · 외교부 · 행정안전부 · 문화체육관광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 국립공원공단 임원 중 이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 지질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지질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4)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 · 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 ·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 ·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4(지질공원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지질공원위원회를 둔다.

1.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중 유네스코의 프로그램에 따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하여 필요한 후보지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질공원의 관리 ·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환경·생태·경관·산림·해양·문화·휴양·안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환경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또는 공원정책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기 능	- 자연공원의 지정·폐지, 구역변경 심의 - 공원기본계획 수립 및 공원계획 결정·변경 심의 - 그 밖의 자연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 지질공원의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 지질공원 중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기 위한 후보지 선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질공원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등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립공원위원회와 지질공원위원회를 국가자연공원위원회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국립공원위원회와 지질공원위원회는 ① 공원계획 결정 및 지질공원 인증 등 자연공원의 관리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있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② 현재 9명의 위원이 두 위원회에 중복으로 소속되어 있는 등 위원의 자격과 위원회의 구성도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원회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7)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임(「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u>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 회를 설치할 수 있다.</u> 1. <u>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u> 2. <u>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 능성</u> 3. <u>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u> 4. <u>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① ~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⑤ 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의 방법·절차, 제3항에 따른 결과 공개의 방법, 제4항에 따른 사전 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 방법 ----- ----- ----- -----.
---	--

현행법 제10조제2항²⁵⁾은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제출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²⁶⁾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10조제4항은 환경부장관이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사전검토협의회’는 2017년 회의(총 9회) 개최 이후 댐건설 수요 부재 등으로 2018년부터는 구성되고 있지 않음²⁷⁾.

25)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댐건설의 적정성 검토)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제출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해당 지역에 댐건설이 예정되는 등 댐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댐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 댐 이외의 대안 및 그 실행가능성
3. 댐 사업에 대한 해당 지역의 수용가능성
4. 그 밖에 댐 사업의 추진 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6)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및 홍수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10년 단위의 관리계획(이하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7) 환경부는 위원회 정비 초기 상황과 비교해볼 때 현재는 정책여건이 변화하여 댐 건설의 수요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최 실적이 저조한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댐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협의회’를 폐지하더라도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²⁸⁾에 따라 댐건설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대한 ① ‘공청회의 개최’, ②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대한 자문, ③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을 통해, 댐 건설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지역 주민, 관련 기관 및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임.

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28)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③ **환경부장관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1. 방재업무 관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공청회의 개최
3.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하천유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말한다)에 대한 자문
4.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제29조(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①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둔다.**

1. 수자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 ②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8) 「습지보전법」

개정안은 습지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2 삭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부	<삭 제>

의 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정책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습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2·3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구성,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도록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²⁹⁾.

또한, 습지보전기본계획과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³⁰⁾하고 있음.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국가습지심의위원회
근거조항	습지보전법 제5조의2
소속	환경부
위원장	환경부 차관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30명(현재 미구성) - 습지정책 추진 관련 관계 행정기관, 전문가 및 환경단체로 구성되며, 습지정책, 국제협약(람사르협약) 이행 등에 적극 참여·활동한 민간전문가 고려
기 능	- 습지보전에 관한 사항 심의(습지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협약당사국 총회 결정 결의문과 권고사항 실행, 그 밖의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 등)

29) 「습지보전법」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습지조사 및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습지조사(이하 “습지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이하 “기초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습지보전에 관련된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0) 「습지보전법」 제5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결의문과 권고사항의 실행
3. 그 밖에 중요한 습지보전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안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2019년에는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최된 회의는 서면 회의로 운영되었으며, 2023년에는 2차례 회의가 운영되는 등 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함을 고려할 때,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국가습지심의위원회 회의 현황]

연도	개최일자	심의안건 내용	비고
2019	-	-	실적 없음
2020	2.3~12	제2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신청 후보지(안) 선정	비대면 (서면 회의)
	11.18~24	심의1) 광주시 장록 습지보호지역 지정 심의2) 철원군 용양보 습지보호지역 지정 보고1) 고양시 장항습지(한강하구) 람사르습지 등록	
2021	11.5~15 12.17~29	충주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경남 고성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2022	2.25~3.7	람사르협약 국가보고서(안)	
	12.20~26	제4차 습지보전기본계획(안)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2023	5.26	대전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안) 문경 돌리네 람사르습지 등록 신청(안)	대면
	8.23~30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 후보지(안) 제1차 람사르습지도시 재인증 신청 후보지(안)	비대면 (서면 회의)

다만, 개정안에 따라 국가습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경우 습지보전 정책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법률상 절차

가 부재하므로,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환경부는 습지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 자문 및 논의를 위해 관계 기관, 민간전문가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9)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은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및 제10조의9).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illegible]

<u>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및 제10조의9³¹⁾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 정화책임자의 선정에 대해 자문하는 환경부 소속 위원회임.

토양정화자문위원회는 최근 3년간 2차례 개최되었는데, 이는 지자체가 정화책임자 선정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임.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토양정화자문위원회
근거조항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
소속	환경부

31)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등을 명할 수 있는 정화책임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양오염에 대한 각 정화책임자의 귀책정도, 신속하고 원활한 토양정화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토양정화등을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의9에 따른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9(토양정화자문위원회) ①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토양정화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장	위원 중에서 환경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위원구성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 내외(현재 9명) - 토양환경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등(교수 6명, 변호사 1명, 전문기관 2명)
기 능	- 자문안건에 대한 자료분석·현장조사·법률 검토 등을 통해 오염원인 및 오염시기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정화책임자 중 정화명령 우선순위 결정하여 지자체에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는 지자체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법적 강제력은 없음)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토양정화자문위원회를 폐지하더라도 정화책임자 선정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서 별도로 자문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0)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은 ① 현행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② 보궐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u>대통령</u>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 <u>국무총리</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u>위원</u>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25조(위원의 임기 등) ① ----- ----- ----- ----- <u>위원</u> (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

<신 설> ② 물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 되, 제21조제3항제3호 및 제23조제 3항제3호에 해당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협의하여 지명하는 사람 으로 한다.	<u>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 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 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 행할 수 있다. ③ ----- - 위촉위원 ----- ----- ----- -----.
--	--

현행 「물관리기본법」 제20조³²⁾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
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32)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
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물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일원화 및 통합 물관리 정책 실현을 위해 2019년 7월에 설치되었으며, 지난 3년간 총 4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국가물관리위원회
근거조항	물관리기본법 제20조
소속	대통령
위원장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위원구성	공동위원장 포함 30명 이상 50명 이하(현재 당연직 19명, 위촉직 30명) - 기재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산림청장, 기상청장 -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유역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4명) - 관련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에 속한 전문가
기 능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물관리기본법 제22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등

개정안은 총리·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 확립 및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보궐위원의 임기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소속과 위원장을 국무총리로 일원화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국가물관리위원회 소속 변경에 따른 변동사항]

○ 소속 변경(대통령→국무총리) 이외에는 현행과 동일

구분			현행	개정안
국가 물관리 위원회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
	위원 구성		공동위원장(국무총리, 민간) 포함 30~50명	현행과 동일
	당연직		관계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등 19명	현행과 동일
	위촉 직	위원장 위원	대통령이 임명 대통령이 위촉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